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2. 02. 18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2. 02. 18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 - ① ’22. 02. 16(수)¹⁾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 - ② ’22. 02. 17(목)²⁾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2. 02. 17(목)³⁾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22년 1월 12일

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28

주식회사 태성 대표이사 김종학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1)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

2), 3)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